
마포 문화관광상품 판매활성화 사업 과업지시서



소 속 공예디자인팀
문 의 처 02-2096-0175
F a x 02-2096-0085
발주기관 서울디자인재단
홈페이지 www.seouldesign.or.kr

「마포 문화관광상품 판매활성화」 사업 용역

서울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포구 내를 대상으로 공예상품 및 콘텐츠 기획과 개발, 창업지원, 전시행사 프로그램 개발, 판매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프로모션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서울 공예유통을 혁신하고자 함

I

사업안내

- 사업명 : 「마포 문화관광상품 판매활성화」 사업 대행사 선정
- 사업예산 : 일금 사억팔천만원정(₩480,000천원/VAT포함)※부가세포함
- 사업기간 : 2016. 계약일로부터 ~ 12월 31일
- 사업목적
 - 사업 추진을 위한 마포구내 거점 장소 선정 및 구축
 - 상품 및 콘텐츠 기획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반 구현
 - 창업지원과 마포 공예문화상품 홍보와 유통망 개척

II

과업내용

- 과업 개요
 - 사업명 : 「마포 문화관광상품 판매활성화」 사업 대행사 선정
 - 사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~ 12월 31일
 - 사업대상지 : 마포구 내
 - 사업목표 : 마포 문화관광상품 판매활성화 센터 구축 후 프로그램 기획, 개발 후 운영
 - 추진방향

1단계

-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 구축
 - 지원 활동을 위한 센터 장소 선정
 - 센터 운영 시간, 인력, 제반 사항 확보
 - 대상 및 고객 선정 및 확보

2단계

- 비즈니스, 유통 지원 프로그램 기획/개발
 - 상품 및 콘텐츠 기획/개발
 - 창업 프로그램 기획/개발 후 지원
 - 전시행사 프로그램 기획/개발 후 진행
- 이벤트 프로모션 및 홍보
 - 마포 문화관광상품 판매활성화 추진

□ 과업 범위

○ 마포 문화관광상품 판매활성화를 위한 센터(제반 및 공간) 구축

- 운영 취지 : 브랜드 관광 상품 발굴 및 개발을 통한 공예 산업 육성과 유통 혁신
- 센터 역할 : 공예 산업 단체 및 공공에게 개발을 통한 공예 산업 육성과 유통 혁신
- 운영 방법 : 마포 내에서 중점 운영

구 분	내 용
인 력	위탁업체 운영, 재단 점검
용 도	공예 비즈니스, 활동 서비스 지원
운영시간	월~금 : 10:00 ~ 19:00 ※ 위탁기관 제안에 의해서 변경 가능
설 비	PC 및 위탁업체 제안 설비 구축(공방 및 공예인을 위한 폭넓은 지원 설비)
고 객	마포 공예인 및 단체, 방문하는 일반인을 동시에 고객으로 확보

※ 과업내용은 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운영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

- 마포 특화 공예문화 비즈니스 지원

구 분	대 상	내 용
상품 및 콘텐츠 기획/개발	- 서울 내 공예인 및 공방	- 마포 브랜드 공예품 개발 - 패키지, 가격, 소재, 유통 등 상품화 지원
창업지원	- 주체 : 마포 공예인 - 관람 : 마포 내방객	- 공예 교육 프로그램 특강 지원 - 창업 공간 및 제반 사항 지원
전시행사		- 장소 : 마포구 내 - 공예품과 관광상품을 연계한 전시 진행

- 문화 관광상품 판매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과 홍보

구 분	대 상	내 용
이벤트 프로모션	- 주체 : 위탁기관 - 대상 : 관광객 및 일반인 ※ 온라인 프로모션 가능	- 장소 : 제한 없음 - 문화관광상품 판매활성화 프로모션 진행
홍보	- 일반인	- 문화관광상품 판매를 위한 홍보 활동

○ 북촌 및 타 지역과 교류하여 시너지 창출 및 공예 문화관광상품 판매활성화

- 마포와 북촌, DDP와 공동 유통망 마련과 교류
- 북촌, DDP의 전시장과 공방 시설 공유와 교류

- 마포와 북촌 지역 간공예 및 관련 단체 간 협력 체결 지원

○ 협상내용

1. 사업 착수와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마포구 내 거점 장소 선정
 - 센터 운영/연구실, 강의실, 전시 및 상품판매실, 공예 실습실 및 창업실, 도구실 구성
2. 마포 공예 브랜드 상품 및 콘텐츠 기획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과 제반 구현
 - 지역별로 특화 또는 차별성이 없는 공예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마포만의 특색이 있는 브랜드를 생성 및 마포 공예 브랜드 상품 개발
3. 마포 중심으로 창업지원과 신진 공예인 육성 및 발굴
 - 마포 지역의 신진 공예인 육성 및 발굴
 - 창업, 마케팅, 조형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(롤 모델)을 섭외하여 공예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.
4. 전시행사를 통하여 마포 공예문화 상품 홍보와 유통망 개척
 - 마포만의 특색이 있는 브랜드 및 네임 구축
 - 브랜드 상품 홍보를 위해 공예박람회 및 플리마켓 참가
 -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소량생산 유통 프로세스 구축
 - '공예아이디어은행'을 통해 공예가의 아이디어를 실현 시킬 수 있도록 지원
5. 홍보를 통한 공예품 중심의 마포 문화관광상품 판매 활성화
 - 마포 문화관광상품 판매활성화 사업 전문 홍보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마포 공예 브랜드 상품 홍보 및 신진 공예가 홍보 진행
 - 마포 관광객을 대상으로 과정 교육이 아닌 자신의 공예품을 만들 수 있는 참여형 공예 실습 프로그램 운영

※ 행정사항

- ① 제안가에서 위 협의 내용에 따른 세부내역 보완 및 작성
- ② 과업추진 세부일정표 보완 및 업무분장, 참여인력 조직도 체계화
- ③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수시보고, 결과보고 진행

○ 기타사항

- 행사 기간 중 안전사고 대비 계획 및 운영
-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보안하여야 함

○ 산출물

- 지원센터 및 제반 사항 구축 결과보고서, 프로그램별 운영 결과보고서, 프로그램 교재, 홍보 결과보고서, 교육행사 이미지 및 기록 영상물 등, 「발주기관」이 과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각종 만족도 결과보고서, 향후 중장기 운영방안, 정산서(원가정산기관 날인, 사업내 포함) 등

○ 산후 관리

- 공방 및 공예인 평가의견 수렴 : 만족도 등 의견수렴 및 분석
- 객관적 사후 행사 모니터링, 객관적 성과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
- 참가자들의 결과물을 활용한 연계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소통 및 공예문화 활성화에 기여

○ 기타사항

-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재단의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, 삭제,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경우, 과업수행자는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
-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보안하여야 함
- 선정 업체는 본 과업에 전담 PM을 투입해야하며,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제작 처음 단계부터 계약 완료일까지 바꾸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본 과업의 산출물에 대한 모든 권리(저작권, 소유권, 인격권, 판매권 등)는 '**서울 디자인재단**'에 있음
- 과업 수행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, 행정적, 기술적인 비용 및 문제 처리는 계약 상대방이 모두 책임을 지고 부담하여야 한다.

□ 사업수행 지침

○ 과업수행지침

※ 본 과업지시서는 편의상 과업 지시서는 “발주기관”으로, 과업 수행자는 “계약상대자”로 칭한다.

-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과업을 수행한다.
- 계약상대자는 기획 및 디자인 등 작업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획안을 수시로 제공한다.
-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.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상호협의 조정할 수 있다.
-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○ 과업의 효력

-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·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-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 -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
 - ②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
 - ③ 재단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
 - ④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
 - ⑤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
 - 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
 - ⑦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
 - ⑧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⑨ 당초 제안서 제출 시 업체 소개내용, 참여인력 경력, 사업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
 - ⑩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
-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, 재단은 대행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, 선지급분이 있을 경우 대행사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계약해지 조치가 진행되며, 재단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용역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○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

-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화하고,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인력투입 계획을 제시한다.
- 사업의 질적, 안정적 관리를 보완 및 통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디렉터와 대표사(공동수급 시 협력사)의 역할 및 추진체계를 수립한다.
- 행사의 실행부분은 자체 전문 인력(조직)보유 또는 현지 전문 업체와 별도 컨소시엄 및 파트너십을 통해 국제행사 수행의 전문성 확보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.
- 사업의 창의력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사업 수행 시 재단의 승인에 의한 디자이너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또는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○ 수행 환경 검토

- ① 본 사업의 목표 및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제안에 임한다.
- ② 본 사업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예공방 밀집지역으로서 서울이 공예도시임을 알리고, 디자인 서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한다.
- ③ 본 제안요청서 및 협약내용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행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한다.
- ④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⑤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, 제안서,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⑥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 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⑦ 인쇄 및 홍보 등은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진행한다.
- ⑧ 각종 진행과정에서 전문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며, 작업 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 하고, 작업 추진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.
- ⑨ 본 사업 제안과 관련한 자료(사진, 데이터, 그림 등)의 확보(촬영, 구매, 임대, 지급 등) 및 제안내용 등의 특허권, 저작권 등이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제안사가 해결하며, 본 계약 수행 중에 계약 당사자 간에 발행사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.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.

○ 수행 조건

- ①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 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, 중간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· 제출하여야 하며, 이때 서울디자인재단은 필요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,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④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안사는 서울디자인재단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·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.
- ⑤ 모든 저작권, 소유권은 발주처(서울디자인재단)에게 있다.